

프로미카 다이렉트 원데이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약관

2025년 9월 1일

promycar | promylife

D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브랜드 프로미카와 장기보험 브랜드 프로미라이프를 통해
고객의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다는 보험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프로미(Promy)는 Promise(약속)을 줄인 말로, 고객과의 약속은 꼭 지키겠다는
DB손해보험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계약품질 보증안내

○ 보험 가입시 꼭 확인하실 사항	3
○ 보험 가입후 꼭 확인하실 사항	3
○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꼭 아셔야 할 사항	5
○ 회사에서 알려 드리는 사항	7
○ 보험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8
○ 약관용어 풀이 (참고)	9
○ 특별이익제공 행위 금지 안내	9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0
○ 예금자 보호안내	11

프로미카 다이렉트 원데이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프로미카다이렉트 원데이 자동차보험의 구성

2편 프로미카 다이렉트 원데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17
제2장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18
제3장 자기신체사고	19
제4장 타인자동차손해	21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24
제2장 손해배상금청구권자의 직접청구	27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29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30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33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34
제4장 그 밖의 사항	37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	39
〈별표 2〉 대물배상 긴급기준	50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54
〈별표 4〉 과실상계 등	54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56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56

[붙임]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57
[붙임]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71

프로미카 다이렉트 원데이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① 자가용자동차 특별약관	79
① 대인배상·지원금 추가특별약관	79
② 자동차상해 추가특별약관	80
② 렌터카 특별약관	82
① 렌터카 휴차료 보상 추가특별약관	82
③ 법률비용 지원금 특별약관	83
④ 법률비용 지원금 특별약관 (보장확대형)	86
⑤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90
⑥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93
⑦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93

보험 가입시 꼭 확인하실 사항

■ 청약서와 보험료영수증은 받으셨습니까?

- ▷ 청약서와 보험료영수증을 꼭 받으십시오
다만,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하시는 경우에는 보험료 영수증을 드리지 않습니다.

■ 청약서와 보험료영수증의 기재내용은 확인하셨습니까?

- 다음은 사고 발생시 보상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입니다.
- ▷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나이, 가족 여부)
 - ▷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 (대인사고, 대물사고 등 담보내용)
 - ▷ 분할보험료 납입횟수와 납입기일
 - ▷ 보험가입자의 성명, 주소
 - ▷ 차량번호, 차명, 배기량(승용차의 경우), 정원(승합차의 경우) 및 적재직량(화물차의 경우)
 - ▷ 추가장착한 부속품(에어백 등) 기재 여부
 - ▷ 자동차 구조변경(적재함, 탑, 냉장탑, 냉동탑, 기중기장치 등) 기재 여부

■ 청약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자필로 서명하셨습니까?

- ▷ 청약서 기재내용이 원하시는 보험가입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신 후에 반드시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후 꼭 확인하실 사항

■ 보험증권과 약관은 받으셨습니까?

- ▷ 보험증권은 약관과 함께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 ▷ 보험증권의 기재내용이 청약하신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만약 보험가입 후 15일 이상이 지나도 증권이 도착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설계사) 또는 저희 회사 고객상담센터로 연락주시오. 바로 증권을 재발급하여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당사 고객상담센터 : 1566-0000(전화 가입고객 전용상담센터)
1600-0100(인터넷 가입고객 전용상담센터)



■ 분할보험료는 반드시 기한 내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 ▷ 보험증권에 기재된 분할보험료 납입기일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분할보험료가 기한 내에 납입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 ▷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이체일에 자동이체계좌의 잔고가 충분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분할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분할보험료 납입최고문'을 보내 드립니다.
- ▷ 만일, 분할보험료가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납입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저희 회사에 통보 하셔야 합니다.

- ▷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변경사항
 - 주소가 변경된 경우
 - 자동차를 교체한 경우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교체한 새로운 자동차의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범위가 바뀐 경우

예를 들어 '만26세이상 한정운전특약'을 가입하였는데, 보험기간 도중에 24세인 사람이 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저희 회사에 알리어 보험계약내용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셔야만 사고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였는데 가족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게 된 경우

'가족'의 범위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장인장모 및 시부모만 해당됩니다.

▷ 변경사항 통보방법

-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리점(설계사) 또는 계약지점에 통보
- 당사 고객서비스팀, 지점 방문 : 동봉된 약관 후면의 연락처 참조
- 당사 고객상담센터에 통보 :
 - 1566-0000(전화 가입고객 전용상담센터)
 - 1600-0100(인터넷 가입고객 전용상담센터)
- 당사 홈페이지에서 변경 요청 : www.idbins.com

■ 사고 발생시 우선 조치할 사항

- ▷ 첫째, 부상자 구호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
 - 부상상태 확인
 - 병원으로 후송 (택시기사 등 주워사람의 도움 요청)
- ▷ 둘째, 사고 정황증거 확보 (사고 원인, 과실 판정에 중요)
 - 사고장소, 차량위치 등을 도로에 표시(스프레이, 백록 등)
 - 사고의 흔적이나 물체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 (일회용 카메라 비치)
 - 사고목격자 확보(연락처/ 명함을 받아둔다)
- ▷ 셋째, 교통질서 회복
 - 차대차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협조요청서" 기재/서명후 사고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
- ▷ 넷째, 경찰서 신고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
 - 인사사고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물적사고만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 신고의무 면제
 - 신고 내용 :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 및 피해내용, 보험가입사항, 그밖의 조치사항 등
- ▷ 다섯째, 보험회사 통보
 - 통보하실 연락처
 - 사고접수센터 : 1566-0000(전화 가입고객 전용상담센터)
 - 1600-0100(인터넷 가입고객 전용상담센터)
 - 가까운 보상서비스센터: 동봉된 약관 후면의 연락처 참조
 - 통보하실 내용
 - 보험가입자의 성명, 차량번호, 운전자의 성명
 - 사고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손해사항
 - 경찰서 신고여부, 수리공장 또는 입원병원



■ 사고통보 이후의 보상처리 절차 및 방법

사고접수 및 사고처리 안내



사고접수시 사고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편리한 시간을 예약하시면 예약 시간에 상담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발급 요청)

보상서비스 전문요원 배당



사고접수 후 1시간 이내에 보상서비스 전문요원이 안내드립니다.

사고 조사



피해자 면담 및 피해물 확인, 사고원인, 과실비율의 판단 등 사고조사를 하고, 소액사고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해자 및 피해물 관리



피해자 치료과정 및 피해물 수리과정 확인, 합의금 등 피해액 산정

합의 절충 (소송)



피해자(측)에 손해배상금을 제시하고 절충하여 합의하고, 소송 제기시엔 처리 대행

종결 처리

보상처리과정을 보험가입자께 알려드리고 사고로 인한 할인할증의 변동이나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할 경우, 당사에서는 FAX송부 또는 보상서비스 요원의 제출 대행 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보상이 안되는 경우

- ▷ 계약전/후의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 ▷ 분할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 ▷ 자동차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한 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 ▷ 자가용 승용차로 영업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
- ▷ 운전자연령 만26세(또는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후 해당 연령 미만의 운전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후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 위의 경우 이외에도 보상되지 않는 사고가 있으므로 약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알려 드리는 사항

■ 보험증권 송부

▷ 송부시기

- 보험가입하신 후 10일 이내에 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우송
- ▷ 증권을 받으신 후 확인하실 내용

- 개인자의 주소, 성명
- 차량번호
- 담보내용
- 운전기능자의 범위: 가족운전자 한정 여부, 운전기능자의 연령
-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방법

▷ 증권 기재내용에 이상이 있을 때

- 증권에 기재된 계약체결 대리점(설계사) 또는 저희 회사 고객상담센터로 연락
- 증권에 동봉해 드린 회신엽서에 기재하여 우송

■ 분할보험료 안내

▷ 분할보험료 안내

- 보험증권에 분할납입 회차별 납입기일과 보험료를 기재하여 안내
- 분할보험료 납입용 지로영수증을 분납기일 약 20일 전에 우송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하시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가 없으므로 해당 이체일자에 자동이체 계좌의 잔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보험료 최고 안내

- 분할보험료 납입이 지연될 경우 '분납최고 안내문'을 청약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변경 통보된 주소로 등기 우송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 유예기간 말일 24:00 부로 보험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고, 그 이 후에 발생하는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 만기일 안내

▷ 「보험료 자동납입특약」과 「보험계약 자동갱신특약」을 기입하시지 않은 경우

구분	안내 시기	안내 방법	안내 내용
1차 안내	만기일 약 2달전	안내문 우송	- 만기일자
2차 안내	만기일 약 1달전	갱신계약 지로영수증 또는 갱신 안내문 우송	- 만기일자: 갱신보험료 (단, 계약에 따라 보험료 산 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만기 일자만 안내)

▷ 「보험료 자동납입특약」과 「보험계약 자동갱신특약」을 기입하신 경우

구분	안내 시기	안내 방법	안내 내용
1차 안내	만기일 약 2달전	안내문 우송	- 만기일자
2차 안내	만기일 약 1달전	자동갱신 계약 체결 안내문 우송	- 만기일자: 갱신보험료 - 갱신계약 청약서 및 책임보 험가입증명서

■ 보험계약 체결후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하시면 바로 처리하여 드립니다.

보험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분쟁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객상담센터 또는 계약체결지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회사 전화번호

- 고객상담센터 : 1566-0000(전화 가입고객 전용상담센터)
1600-0100(인터넷 가입고객 전용상담센터)

- 계약체결 지점: 증권에 기재된 연락처 참조

▷ 관련 기관: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약관용어 풀이 (참고)

▷ 기명피보험자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가입자

▷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로서 보험 가입시 기입
자가 선택하여 보험증권상 기재된 금액

▷ 보험기액 (차량기액)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기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기액을 말합니다.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
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기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기액을 말합
니다.

▷ 자기부담금

사고로 자기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 차량대체

보험기간 중도에 기존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하고 새로운 자동 차를 구입하여
기존보험계약에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전부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원천히 파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기액 이상인 경우를 말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신속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므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모든 차량소유자에게 대인배상 I (책임보험)과
대물배상 기입을 강제화한 근거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고질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
험 대인배상 II (무한) 및 대물배상 기입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
제하는 법률 (단, 11대 중대범규위 반사고, 사망사고 및 뺑소니 사고는 제외)

특별이익제공 행위 금지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관련 문의(DB손해보험)

- 전화 : 1588-0100 - 인터넷 : www.idbins.com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전화 : 1588-3311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인터넷보험신고센터」



1. 금융서비스의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등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가입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제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

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한국신용정보(주) :	☎ 02-2122-4000 인터넷 http://www.nice.co.kr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 02-3771-1000 인터넷 http://www.kisinfo.com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 1577-1006 인터넷 http://www.sc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02-708-1111 인터넷 http://www.allcredit.co.kr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개인신용정보 고충처리 담당자	대한손해보험협회 담당자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02)3011-499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02)3702-85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6층 (수송동, 코리안리빌딩)	(국번없이) 1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본문 내용입니다.

보 통 약 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프로미카 다이렉트 원데이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2편 프로미카 다이렉트 원데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4편 일반사항

약관 본문에 등장하는 항목체계의 “표기법”과 “읽는 법”을 참고하세요.

항목체계	표기법	읽는 법
항	①, ②, ...	제1항, 제2항, ...
호	1, 2, ...	제1호, 제2호, ...
목	가, 나, ...	가목, 나목, ...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프로미카 다이렉트 원데이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단기요율 : 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 마약 또는 약물 등 : 「도로교통법」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무면허운전(조종) : 「도로교통법」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 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 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하거나 장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 부속기계장치
 -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7. 운전(조종) :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제1항 · 제148조(별칙) 및 제148조의 2(별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행 :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9. 음주운전(조종) :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금융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피보험자 :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인명보호장구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를 말합니다.

다.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 예 : 바이크 전용 슈트, 어메이저 등(라이더자켓 · 팬츠 · 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

(*)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소지품'의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생성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 가방, 골프캐 등

17. 상해 :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8.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량은 손괴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9. 보험가액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기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기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20. 미약 · 약물운전

미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1. 새 부분품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합니다.

제2조(프로미카 다이렉트 원데이 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프로미카 다이렉트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4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프로미카 다이렉트 원데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배상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배상	배상책임보험(이하 대인배상)이라 하며,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나. 대물배상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나. 타인자동차손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다른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③ 이 자동차보험의 기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자동차^(*)를 그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아 운전하는 자
-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10일이내로 대여 받은 렌터카^(*)를 운전하는 자
- 위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기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용어풀이

타인자동차 및 렌터카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제5조에서 정한 의무보험을 기입한 자동차로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자동차에 한합니다.

(*) **타인자동차** :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 또는 리스 한 경우가 아닌 자동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자가용 승용차
- 법정승차정원 16인승 이하의 자가용 승합자동차

(*) **렌터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하여 자동차대여 사업등록을 한 자로부터 빌린 자동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사업용 승용자동차
- 법정승차정원 16인승 이하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④ 위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 렌터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의 개시시점부터 1시간 이내에만 기입할 수 있습니다.

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 용하는 「자동차 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납입할 보험료 = 기본보험료 + 특약보험료 등

구 분	내 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보험료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특약 등에 적용하는 보험료



제2편 프로미카다이렉트 원데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해)

- 대인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신고하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 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장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text{지급 보험금} = \text{‘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text{비용} - \text{공제액}$$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용어풀이

(*)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 :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I**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 I**에서 자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 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제7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대인배상** : 1사고당 1억원

2.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자급보험금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자기신체사고

제8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제9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8.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11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2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신체사고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text{지급보험금} = \text{실제손해액} + \text{비용} - \text{공제액}$$

1.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실제손해액은 「별표 1~5)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I** (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 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4. 제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장 타인자동차손해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타인자동차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5. 회사가 보상할 위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공제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공제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 '경미한 손상'이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예시) 외장부품의 코팅, 색상 등의 손상에 대한 도색, 팬금으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 등

(*)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는 **타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 **'타차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말함)와 사고발생 시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단,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제14조(피보험자)

타인자동차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타인자동차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도난(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 장치만의 도난을 포함합니다)으로 인한 손해
-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단, 타인자동차의 차량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기명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타인자동차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text{지급보험금} = \frac{\text{피보험자동차에}}{\text{생긴 손해액}} + \frac{\text{비용}}{-} \frac{\text{보험증권에 기재된}}{\text{자기부담금}}$$

-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기액표(격차율에서 정한 기준 포함)에 정한 기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기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에는,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가격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준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피보험자동차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경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 **'중요한 부분'**이란 엔진, 미션, 캐빈, 적재함, 바디 및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 포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4.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 시 사고 당사자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기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타인자동차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인자동차손해** 담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타인자동차손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기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타인자동차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기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부당득이)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기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타인자동차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기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1)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2) 실제 손해액에서 당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타인자동차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을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17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회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타인자동차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다른 자동차와 충돌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훼손되었을 때

제18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자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 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주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手段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19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	타인 자동차 손해
1. 보험금 청구서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	타인 자동차 손해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 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5.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시 말소사실증명서			○
	전손사고 후 이전 매각시 이전서류	○		○
5.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		○
6.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 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 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제20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기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 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 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④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19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1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금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23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대물배상
1. 교통사고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 손해배상청구서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제24조(가지급금의 지급)

-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보험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경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 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와 동일하게 제23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25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타인자동차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6조(보험회사의 대위)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이하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이하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이하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7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힘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8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

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 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 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29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28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0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34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 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1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2}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32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분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⑨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니다.

제33조(청약의 철회)

- ①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용어풀이

- (*) '일반금융소비자'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 '전문금융소비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④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⑥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⑦ 보험회사가 제5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볼니다.

제34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지는 보험기간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날의 동일시점까지입니다.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개시시간부터 마지막날 종료시간까지입니다.

제35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36조(계약 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야 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2.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4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4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실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자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사고발생 시의 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자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

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여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39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0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41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외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 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

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44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3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작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42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 월이 경과한 때
 -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37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보험회사가 제3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37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등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회사가 제3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37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4.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44조(약관의 해석)

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43조(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빙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제31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4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제4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보험회사가 제4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4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⑥ 보험회사가 제5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5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6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제47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자급보장)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48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9조(분쟁의 조정)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기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50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51조(준용규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1〉 대인배상 지급 기준

※ 지급기준에 등장하는 “연령(나이)”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연령(나이)을 의미합니다.

가. 사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장례비	가. 지급액 : 5,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른.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른.
3. 상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기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단, 사망일부터 취업기능연한 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기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 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항 목	지 급 기 준
3. 상실 수익액	<p>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2}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p> <p>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3}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p> <p>용어풀이</p> <p>(*)1)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p> <p>(*)2)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p> <p>(*)3)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p> <p>나) 사업소득자^{(*)1}</p> <p>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p> <p>산 식</p> <p>{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p> <p>(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p> <p>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p>

항 목	지 급 기 준
3. 상실 수익액	<p>용근로자 임금^{(*)2}을 인정함.</p> <p>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용어풀이</p> <p>(*)1)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p> <p>(*)2)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표본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p> <p>산 식</p> <p>(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p> <p>※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p> <p>다) 그 밖의 유치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p> <p>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표본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 발생 직전 1년 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1}에 한함.</p> <p>용어풀이</p> <p>(*)1)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학 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p>

항 목	지 급 기 준
3. 상실 수익액	<p>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p> <p>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 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p> <p>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p> <p>(2) 가사증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p> <p>(3) 무직자(학생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p> <p>(4) 혐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p> <p>(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p> <p>(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p> <p>(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p> <p>(6) 외국인</p> <p>(가) 유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p>(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생활비율 : 1/3</p> <p>라. 취업가능월수</p> <p>(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p>

항 목	지 급 기 준								
3. 상실 수익액	<p>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p> <p>(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 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피해자의 나이</th> <th>취업가능월수</th> </tr> </thead> <tbody> <tr> <td>62세부터 67세 미만</td> <td>36월</td> </tr> <tr> <td>67세부터 76세 미만</td> <td>24월</td> </tr> <tr> <td>76세 이상</td> <td>12월</td> </tr> </tbody> </table> <p>(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탄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p> <p>(5) 외국인</p> <p>(가) 적법한 일시체류자^(*)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p> <p>(나) 적법한 취업활동자^(**)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p> <p>(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p>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용어풀이

-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항 목	지 급 기 준
3. 상실 수익액	 <p>산 식</p> $\frac{1}{1+i} + \frac{1}{1+2i} + \dots + \frac{1}{1+ni}$ <p>i=5/12%, n=취업가능월수</p>

나. 부상

각 보장증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 목	지 급 기 준
1. 적극손해	<p>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p> <p>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p> <p>(1) 입원료</p> <p>(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p> <p>(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금하지 아니함.</p> <p>(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금하지 아니함.</p> <p>(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치저,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p> <p>(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p> <p>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p>

항 목	지 급 기 준																																				
1. 적극손해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2. 위자료	<p>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p> <p>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급별</th> <th>인정액</th> <th>급별</th> <th>인정액</th> <th>급별</th> <th>인정액</th> </tr> </thead> <tbody> <tr> <td>1</td> <td>200</td> <td>6</td> <td>50</td> <td>11</td> <td>20</td> </tr> <tr> <td>2</td> <td>176</td> <td>7</td> <td>40</td> <td>12</td> <td>15</td> </tr> <tr> <td>3</td> <td>152</td> <td>8</td> <td>30</td> <td>13</td> <td>15</td> </tr> <tr> <td>4</td> <td>128</td> <td>9</td> <td>25</td> <td>14</td> <td>15</td> </tr> <tr> <td>5</td> <td>75</td> <td>10</td> <td>20</td> <td></td> <td></td> </tr> </tbody> </table> <p>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p> <p>3. 휴업손해</p> <p>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p> <p> 용어풀이</p> <p>(*) ①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는 항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p> <p> 산 식</p> $1일 수입감소액 \times 휴업일수 \times \frac{85}{100}$ <p>나. 휴업일수의 산정</p> <p>(1) 휴업일수의 산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p> <p>(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3) 취업가능연한 :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 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함.</p>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6	50	11	20	2	176	7	40	12	15	3	152	8	30	13	15	4	128	9	25	14	15	5	75	10	20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6	50	11	20																																
2	176	7	40	12	15																																
3	152	8	30	13	15																																
4	128	9	25	14	15																																
5	75	10	20																																		

항 목	지 급 기 준
3. 휴업손해	<p>다. 수입감소액의 산정</p> <p>(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p> <p>(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p> <p>용어풀이</p> <p>(*)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 한 사람을 말함.</p> <p>(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 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p> <p>(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4. 간병비	<p>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p> <p>나. 인정 대상</p> <p>(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 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p> <p>용어풀이</p> <p>(*)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 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p> <p>다. 지급 기준</p> <p>(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p>

항 목	지 급 기 준								
4. 간병비	<p>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p> <p>(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p> <p>(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해등급</th> <th>인정일수</th> </tr> </thead> <tbody> <tr> <td>1급~2급</td> <td>60일</td> </tr> <tr> <td>3급~4급</td> <td>30일</td> </tr> <tr> <td>5급</td> <td>15일</td> </tr> </tbody> </table>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5. 그 밖의 손해 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p>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p> <p>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p>								
	다. 후유장애 각 보장증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 목	지 급 기 준								
1. 위자료	<p>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p> <p>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p> <p>(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자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p> <p>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항 목	지 급 기 준																				
1. 위자료	<p> 용어풀이</p> <p>(*)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p> <p>(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만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노동능력상실률</th> <th>인정액</th> <th>노동능력상실률</th> <th>인정액</th> </tr> </thead> <tbody> <tr> <td>45% 이상 50% 미만</td> <td>400</td> <td>14% 이상 20% 미만</td> <td>120</td> </tr> <tr> <td>35% 이상 45% 미만</td> <td>240</td> <td>9% 이상 14% 미만</td> <td>100</td> </tr> <tr> <td>27% 이상 35% 미만</td> <td>200</td> <td>5% 이상 9% 미만</td> <td>80</td> </tr> <tr> <td>20% 이상 27% 미만</td> <td>160</td> <td>0초과 5% 미만</td> <td>50</td> </tr> </tbody> </table> <p>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로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p>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14% 이상 20% 미만	120	35% 이상 45% 미만	240	9% 이상 14% 미만	100	27% 이상 35% 미만	200	5% 이상 9% 미만	80	20% 이상 27% 미만	160	0초과 5% 미만	50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14% 이상 20% 미만	120																		
35% 이상 45% 미만	240	9% 이상 14% 미만	100																		
27% 이상 35% 미만	200	5% 이상 9% 미만	80																		
20% 이상 27% 미만	160	0초과 5% 미만	50																		
2. 상실 수익액	<p>가. 산정방법 :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 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p> <p> 산 식</p> <p>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 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p> <p>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p> <p>(1) 유직자</p> <p>(가) 산정대상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 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p>(나) 산정방법</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2) 가사종사자</p>																				
	<p>3. 상실 수익액</p> <p>(3) 무직자(학생포함)</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4) 혼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6) 외국인</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다. 노동능력상실률</p> <p>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p> <p>라. 노동능력상실기간</p> <p>사망한 경우 취업기능월수와 동일</p> <p>마. 호프만 계수</p> <p>사망의 경우와 동일</p>																				

항 목	지 급 기 준
2. 상실 수익액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3) 무직자(학생포함)</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4) 혼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6) 외국인</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다. 노동능력상실률</p> <p>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p> <p>라. 노동능력상실기간</p> <p>사망한 경우 취업기능월수와 동일</p> <p>마. 호프만 계수</p> <p>사망의 경우와 동일</p>
3. 가정 간호비	<p>가. 인정 대상</p> <p>치료가 중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앙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기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항 목	지 급 기 준
3. 가정 간호비	<p>(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p> <p>(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p> <p>(다) 육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채워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p>
나. 지급 기준	<p>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여, 가정간호비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p>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항 목	지 급 기 준
1. 수리비용	<p>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부득이하게 새 부분품으로 교환수리 하는 경우에는,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 가격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나)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 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 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항 목	지 급 기 준
1. 수리비용	<p>용어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 5에 따라 인증된 부품 (*)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기준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항 목	지 급 대상
2. 교환기액	<p>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항 목	대상
3. 대차료	<p>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p>
나. 인정기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차를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 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용어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항 목	지 급 기 준
3. 대차료	<p>(*)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p> <p>(*)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 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p> <p>(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은 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입차로.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p> <p>용어풀이</p> <p>(*)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p>
	<p>(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p> <p>(가) 등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p> <p>(나)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위 (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p> <p>다. 인정기간</p> <p>(1) 수리 가능한 경우</p> <p>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p> <p>용어풀이</p> <p>(*)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p>

항 목	지 급 기 준
3. 대차료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4. 휴차료	<p>가. 지급대상</p> <p>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p> <p>나. 인정기준액</p> <p>(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p> <p>(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p> <p>다. 인정기간</p> <p>(1) 수리 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p> <p>(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p>
5. 영업손실	<p>가. 지급대상</p> <p>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p> <p>나. 인정기준액</p> <p>(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p> <p>(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인정기간</p> <p>(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p>
6.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며,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항 목	지 급 기 준
7. 견인비용	<p>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곳 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p>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금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만원	8급	180만원
2급	800만원	9급	140만원
3급	750만원	10급	120만원
4급	700만원	11급	120만원
5급	500만원	12급	120만원
6급	400만원	13급	80만원
7급	250만원	14급	5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애구분 및 금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등급	보험가입금액	장애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5,000만원	8급	1,500만원
2급	4,500만원	9급	1,200만원
3급	4,000만원	10급	900만원
4급	3,500만원	11급	700만원
5급	3,000만원	12급	500만원
6급	2,500만원	13급	300만원
7급	2,000만원	14급	2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별표 4〉 과실상계 등

항 목	지 급 기 준
1. 과실상계	<p>가. 과실상계의 방법</p> <p>(1) 이 기준의 대인배상,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p> <p>(2) 대인배상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p>

항 목	지 급 기 준
1. 과실상계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 배상 에서 자급될 수 있는 금액을 제외)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금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 1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용어풀이

(*)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	--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5〉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	---

4. 기왕증	<p>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p>
--------	---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용어풀이

(*)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

항 목	지 급 기 준
4. 기왕증	적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40%
위반 운전자의 차량 동승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 다만, 피보험자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합니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면허운전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감액 적용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1급	3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양안 앙구 파열로 앙구 적출술 또는 앙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텐트그라フ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척추(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천 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흉부 기관지, 기관지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2급	1천 500만원	<p>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목뼈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 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p> <p>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8.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9. 영당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p> <p>10.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1.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둘기 아래부분 분쇄 골절, 관절융기 분쇄 골절, 강강이뼈(경골) 관절융기 분쇄 골절 또는 강강이뼈 먼쪽 관절내 분쇄 골절</p> <p>12.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3.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4. 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p> <p>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3급	1천 200만원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p> <p>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p> <p>3. 단안 앙구 적출술 또는 앙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p> <p>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p> <p>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p> <p>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p> <p>8.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p> <p>9. 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0.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1. 팔꿈치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3급	1천 200만원	<p>12. 손목 부위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3. 넓적다리뼈 또는 경강이뼈 골절(넓적다리뼈머리 골절은 제외한다)</p> <p>14.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5. 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p> <p>1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7. 발목관절의 손상으로 발목뼈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p> <p>18.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4급	1천만원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p> <p>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p> <p>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p> <p>4. 흉부 손상 또는 복복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p> <p>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p> <p>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8. 위팔뼈 골절</p> <p>9. 위팔뼈 몸통 분쇄성 골절</p> <p>10.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1. 노뼈 먼쪽 부위 골절과 자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p> <p>12. 자뼈 몸쪽 부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데지아 골절을 말한다)</p> <p>13.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4.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 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5. 손목뼈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p> <p>16.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4급	1천만원	<p>17.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p> <p>18.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9.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1.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2.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3. 목말뼈 또는 발꿈치뼈 골절</p> <p>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기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25. 팔다리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p> <p>26. 화상, 좌상, 고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p> <p>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5급	900만원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p> <p>2. 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복시(複視)]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p> <p>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p> <p>4. 안정성 추체 골절</p> <p>5. 상완 신경총 상부 뮻통 또는 하부 뮻통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p> <p>6. 위팔뼈 뮻통 골절</p> <p>7.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8. 노뼈와 자뼈의 뮻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p> <p>9. 노뼈 뷴돌기 골절</p> <p>10. 노뼈 먼쪽부위 관절내 골절</p> <p>11. 손목 손배뼈 골절</p> <p>12. 손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4.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p> <p>15.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5급	900만원	<p>16.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7. 넓적다리뼈 또는 몸쪽 정강이뼈의 견열골절</p> <p>18.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9.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p> <p>20. 무릎뼈 골절</p> <p>21. 발목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p> <p>22.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3. 그 밖의 발목뼈 골절(목말뼈 및 발꿈치뼈는 제외한다)</p> <p>24.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손상</p> <p>25.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6.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기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28.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9.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6개 이상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p> <p>30. 다발성 팔다리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p> <p>3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6급	700만원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p> <p>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p> <p>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p> <p>4. 심장 타박</p> <p>5. 폐티백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p> <p>6. 요도 파열로 유치 키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p> <p>7. 혈흉(혈액기증증) 또는 기흉(공기기증증)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p> <p>8.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6급	700만원	<p>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0.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1. 어깨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2. 위팔뼈 대결절 견열 골절</p> <p>13. 위팔뼈 먼쪽 부위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p> <p>14. 팔꿈치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5.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6.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7. 노뼈 몸통 또는 먼쪽 부위 관절외 골절</p> <p>18. 노뼈목 골절</p> <p>19.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p> <p>20. 자뼈 몸통 골절(몸쪽 부위 골절은 제외한다)</p> <p>21. 다발성 손목손허리뼈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p> <p>22.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3.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4. 무릎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5. 반월상(반달모양)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7. 발목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먼쪽 정강이뼈 · 종아리뼈 분리</p> <p>28.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30.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p> <p>31. 19차 이상 22차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7급	500만원	<p>1.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p> <p>2. 겹보임을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p> <p>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p> <p>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p> <p>5. 쇄골(빗장뼈) 골절</p>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7급	500만원	<p>6. 어깨뼈(어깨뼈가시,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p> <p>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p> <p>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9.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0. 자뼈 뾰돌기 기저부 골절</p> <p>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p> <p>12.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3.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4. 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p> <p>15. 손목 부위 손배뼈 · 반달뼈 사이 인대 파열</p> <p>16. 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p> <p>17.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p> <p>18. 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p> <p>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0.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1.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2. 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p> <p>23.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4. 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p> <p>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6. 16차 이상 18차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8급	300만원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p> <p>2.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등의 얼굴 머리뼈 골절</p> <p>3. 외상성 시신경병증</p> <p>4. 외상성 악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5. 복합 고막 파열</p> <p>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7.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p> <p>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p> <p>9.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8급	300만원	<p>10. 위팔뼈 위관절용기 또는 위팔뼈 면쪽 부위 관절내 골 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하지 않은 상해</p> <p>11.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2. 손허리뼈 골절</p> <p>13. 손가락뼈의 몸쪽 손가락뼈 사이 또는 면쪽 손가락뼈 사이 골절 탈구</p> <p>14.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p> <p>15. 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p> <p>16. 골반고리이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7. 무릎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8.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9. 손발가락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0. 팔다리의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하나 또는 두개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p> <p>2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2. 팔다리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3. 팔다리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p> <p>24. 팔다리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p> <p>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9급	240만원	<p>1.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p> <p>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5. 복장뼈(흉골) 골절</p> <p>6. 초간판 탈출증</p> <p>7. 흉쇄관절 탈구</p> <p>8.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9.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면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0. 손가락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9급	240만원	<p>11. 손가락관절 탈구</p> <p>12. 무릎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3.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p> <p>16.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7. 손가락·발가락 편근힘줄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8. 팔다리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p> <p>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10급	200만원	<p>1. 3cm 이상 얼굴 부위 짓김상처(열상)</p> <p>2. 안검과 누소관 짓김상처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p> <p>3. 각막, 공막 등의 짓김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p> <p>4. 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6. 손발가락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7. 다리 3대 관절의 혈관절증</p> <p>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11급	160만원	<p>1. 뇌진탕</p> <p>2.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p> <p>3.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12급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얼굴 부위 짓김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5. 팔다리의 짓김상처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팔다리 각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 짓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내 용
공통	<p>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이라 한다)</p> <p>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한다.</p> <p>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는 큰 폭의 상향</p>

영역	내 용
공통	<p>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p> <p>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p> <p>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피판술이나 부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손 부위, 발 부위에 국한된 손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p>
머리	<p>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머리뼈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출액낭종, 거미막 낭종, 머리뼈 골절(머리뼈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타박상을 말한다.</p> <p>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p> <p>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p> <p>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p> <p>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p> <p>사. 타박상, 짓김상처(열창)은 14급에 준용한다.</p> <p>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p> <p>자.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부상 및 질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p>
흉·복부	<p>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장막액증 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p>

영역	내 용
척추	<p>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p> <p>나. 척추관 혈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p> <p>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p> <p>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p>
팔·다리	<p>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팔다리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편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p> <p>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p> <p>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p> <p>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p> <p>아. 관절 분리절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p> <p>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p> <p>차.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p> <p>카. 팔다리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팔다리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p>
공통	<p>용한다.</p> <p>파. 수술을 시행한 팔다리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선모양)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p> <p>너. 손발가락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p> <p>더. “근육(근), 힘줄(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p> <p>러. 팔다리뼈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팔다리뼈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 골절로 본다. 다만,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p> <p>며. 팔다리뼈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p> <p>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p> <p>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p>

영역	내 용
팔	<p>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p> <p>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p> <p>다. 6급의 어깨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동시에 확인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p> <p>라. 건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건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건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건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p>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영역	내 용
팔·다리	<p>가. 양측 두덩뼈가지(치골지) 골절, 두덩뼈(치골) 위아래 가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p> <p>나. 엉치뼈 골절, 꼬리뼈 골절은 골반뼈 골절로 본다.</p> <p>다. 무릎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에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 측 축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축부인대 파열, 반 월상 연골판파열 등을 병급한다.</p> <p>라. 후경골건 및 건경골건 파열은 발목관절 축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p> <p>마. 넓적다리뼈 또는 경강이뼈·종아리뼈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p> <p>바. 정강이뼈 후과의 단독 골절 시 발목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p> <p>사. 엉덩관절이란 넓적다리뼈머리와 골반뼈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p> <p>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고리를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p> <p>자.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p> <p>차.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 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해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p> <p>카.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두덩뼈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p>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 애 내 용
1급	1억 5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 3,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억 2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기력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 5백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체장애내용
4급	1억 5백만원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하리(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천 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등골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체장애내용
7급	6천만원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하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4천 5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3천 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체장애내용
9급	3천 800만원	<p>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p> <p>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p> <p>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14. 생식기에 뚫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p> <p>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p> <p>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p>
10급	2천 700만원	<p>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p> <p>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p> <p>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p> <p>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p> <p>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p> <p>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p> <p>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뚫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p> <p>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뚫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p>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체장애내용
11급	2천 300만원	<p>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뚫렷한 장애가 남거나 뚫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p> <p>2. 두 눈의 눈꺼풀에 뚫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p> <p>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p> <p>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p> <p>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네번째손가락을 잃은 사람</p> <p>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p> <p>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p>
12급	1천 900만원	<p>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뚫렷한 장애가 있거나 뚫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p> <p>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뚫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p> <p>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p> <p>4. 한쪽 귀의 귓바귀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p> <p>5. 쇠골(빗장뼈), 복장뼈(흉골),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뚫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p> <p>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p> <p>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p> <p>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p> <p>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네번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p> <p>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12. 국부에 뚫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p> <p>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p>
13급	1천 500만원	<p>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p>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체장애내용
13급	1천 500만원	<p>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p> <p>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p> <p>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p> <p>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p> <p>6. 한쪽 손의 염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p> <p>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p> <p>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p> <p>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p> <p>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p> <p>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14급	1천만원	<p>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p> <p>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p> <p>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p> <p>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p> <p>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7. 한쪽 손의 염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p> <p>8. 한 손의 염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p>

비고

-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직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염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빌하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수시로 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팔다리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麻痺)가 인정되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 기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보통약관에 보상내용을 확대(추가)하시거나
제한(축소)하실 때 고객님이 선택 가입하실 수 있는
특별약관 본문 내용입니다.

특별약관

① 자가용자동차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보통약관 제2조의 제3항 제1호의 **타인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용어풀이

(*) **타인자동차** :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 또는 리스 한 경우가 아닌 자동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1)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자가용 승용차
- 2) 법정승차정원 16인승 이하의 자가용 승합자동차

제2조 (보상 내용)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타인자동차손해**의 손해에 한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① 대인배상 | 지원금 추가특별약관

제1조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① 자가용자동차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배상책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정부보장사업은 제외)가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대인배상** Ⅰ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실제 지급금액을 보전하여 드립니다.

③ 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이 보통약관의 **대인배상**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4조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로 합니다.

①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단,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약관 본문에 등장하는 항목체계의 "표기법"과
"읽는 법"을 참고하세요.

항목체계	표기법	읽는 법
항	①, ②, ...	제1항, 제2항, ...
호	1, 2, ...	제1호, 제2호, ...
목	가, 나, ...	가목, 나목,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동 금액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순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긴급조치비용
2. 남으로부터 순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기타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보험자동차에 기입되어 있는 다른 보험계약의 대인배상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악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악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악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되는 지급보험금 전액에 해당하는 사고부담금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①-② 자동차상해 추가특별약관

※ 이 추가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1조 (자기신체사고의 대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를 이 추가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 (보상내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제8조에서 정하는 사고, 이하 같음)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
- 2)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3)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text{지급보험금} = \text{실제손해액} + \text{비용} - \text{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별표 1~5**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순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나. 남으로부터 순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

3) 위 '공제(控除)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① 자동차보험(공제(共濟)계약 포함) 대인배상 I (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 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④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⑥ 배상의무자 또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기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 I과 대인배상 II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위 '②'의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기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 I과 대인배상 II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④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 (대위)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7조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 청구서와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② 렌터카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보통약관 제2조의 제3항 제2호의 **렌터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용어풀이

- (*) **렌터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하여 자동차대여 사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빌린 자동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1)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사업용 승용자동차
 - 2) 법정승차정원 16인승 이하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제2조 (보상 내용)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통약관의 타인자동차손해의 손해에 한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②-① 렌터카 휴차료 보상 추가특별약관

제1조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② 렌터카자동차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타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하여 보통약관 타인자동차손해 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인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 손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4. 휴차료' 항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인정기간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3. 대차료'의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의 제1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에 따릅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③ 법률비용 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대인배상**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8.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9.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10.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11.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않은 경우
 12.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 영향에 따라 정신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②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은 기본형, 고급형의 상품으로 구분되며, 기입하신 상품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망형사합의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사망케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지급기준 한도에서 실제 합의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망형사합의금 지급기준]

구 분	기본형	고급형
사 망	2,000만원 한도	3,000만원 한도

2. 상해형사합의금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지급기준 한도에서 실제 합의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한 사고가 가와 나복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충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중 이 특별약관의 <별표>에 해당하는 사고

나.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은 사고

[상해형사합의금 지급기준]

구 分	기본형	고급형
상해 1~3급	1,000만원 한도	3,000만원 한도
상해 4~7급	400만원 한도	500만원 한도

(주)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3. 변호사선임비용 : 다음의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단, 악식기소는 제외함)

나. 검사가 악식기소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다.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 지급기준]

구 分	기본형	고급형
변호사선임비용	300만원 한도	500만원 한도

4. 벌금 : 대한민국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을 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벌금 지급기준]

구 分	기본형	고급형
벌금	2,000만원 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3,000만원 한도)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각 지급시유가 증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형사합의금」과 「상해형사합의금」을 충복 지급하지 않고 「사망형사합의금」만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지급기준 한도에서 실제 공탁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시에는 지급된 형사합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형법 제 258조 제 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증명서류 등)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2. 경찰관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3.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서류(형사합의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⑤ 다음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⑥ 위 '⑤'에 따라 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관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암시)

3.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대위)]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그 사고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사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제7조(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의 「사망형사합의금」, 「상해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5조(보험금의 분담)에서의 "다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장기순해보험 및 일반보험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제1항 제2호 관련

- ◇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간널목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④ 법률비용 지원금 특별약관 (보장확대형)

제1조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과는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을 죽여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비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벌금(대물)은 아래 ‘②항 5) 벌금(대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프로미카 보험지식

“법률비용지원금”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대하여 적용하는 특별약관입니다. 따라서,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라면, 차량별로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② 회사가 사고마다 지급하는 법률비용지원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상내용	지급기준
1) 사망형사 합의금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사망케 하여 형사 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지급기준 한도에서 실제 합의된 금액을 지급	2억원 한도
2) 상해형사 합의금	<p>1) 다음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피해자 를 다치게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지급기준 한도에서 실제 합의된 금액을 지급 (단, 한 사고 가 다음 ⑦와 ⑧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p> <p>⑦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 항 단서 중 이 특별약관의 〈별표〉에 해당하는 사고</p> <p>⑧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 를 입은 사고</p> <p>2) 위 ‘1)’의 ⑦에 해당하는 사고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해형사합의금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상해 8~14급의 경우 1,000만원을 한도로 지급</p>	<p>상해 1~3급 : 1억 5,000만원 한도</p> <p>상해 4~5급 : 8,000만원 한도</p> <p>상해 6~7급 : 2,000만원 한도</p> <p>상해 8~14급 : 500만원 한도</p>
3) 변호사 선임비용	<p>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실제로 든 비용을 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p> <p>⑨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단, 약식기소는 제외)</p> <p>⑩ 검사가 약식기소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하여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p> <p>⑪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하는 경우</p>	<p>사망 : 5,000만원 한도</p> <p>상해 1~3급 : 5,000만원 한도</p> <p>상해 4~7급 : 3,000만원 한도</p> <p>상해 8~14급 : 1,000만원 한도</p>
4) 벌금(대인)	대한민국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을 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	2,000만원 한도 (특정범죄)

구분	보상내용	지급기준
4) 벌금(대인)	기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기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3,000만원 한도)	
5) 벌금(대물)	도로교통법 제151조(별칙)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 액이 확정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대물 벌금을 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	500만원 한도



프로미카 보험지식

“공소제기”란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그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기소 또는 소추라고도 하며, 이 경우 검사는 사건을 판단하여 정식재판 대신 악식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악식기소”란 벌금 등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서 피의자의 이유가 없을 경우에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서면에 의한 악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절차의 방식을 말합니다.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 ③ 동일한 사고로 ‘②의 1), 2), 3), 4), 5)’의 각 지급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②의 1), 2), 3), 4), 5)’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 한 경우에는 사망형사합의금과 상해형사합의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고 사망형사합의금 만을 지급합니다.
- ④ 위 ‘②의 1) 또는 2)’에서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지급기준 한도에서 실제 공탁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 시에는 지급된 형사합의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⑤ 위 ‘②의 1) 또는 2)’의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형법 제 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증상해 증명 서류 등)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2) 경찰관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 3)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서류(형사합의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⑥ 다음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위 ‘②의 1) 또는 2)’의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2) 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⑦ 위 ‘⑥’에 따라 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경찰관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3)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4)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표〉 ‘2.의 ②, 2)’ 관련 사고

- ◇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 제2항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24조에 의한 건널목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 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5) 범죄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6)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보통약관 제1조 제4호) 또는 음주운전(보통약관 제1조 제9호)을 하였을 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 8)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 9)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10)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않은 경우
 - 11)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보통약관 제1조 제3호) 영향에 따라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생명피보험자
 - 2) 생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5조 (대위)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그 사고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사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의 사망형사합의금, 상해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5조(보험금의 분담)에서의 다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보험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⑤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 (회사의 서비스책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전기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는 동안에 긴급 출동서비스 등을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SOS서비스”라 함)를 제공합니다.

제2조 (SOS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SOS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보상내용
1) 긴급견인	가.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이 필요할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를 한도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나. 위 ‘가’의 긴급견인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의 길이 또는 중량이 견인한 도를 초과하거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배터리 충전	배터리의 방전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다만, 배터리 교환 시는 배터리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타이어 교체	가. 타이어의 평크로 인하여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고장 난 타이어를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훨(Wheel)을 개조한 차량의 경우 피보험자가 훨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지닌 경우에는만 교체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나. 위 ‘가’의 타이어교체시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타이어 평크 수리	가. 지면에 닿은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구멍이 뚫린 단순펑크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타이어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자연 마모로 인한 평크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 위 ‘가’의 타이어펑크 수리 시 다음과 같이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 ‘1’ 또는 ‘3’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ㄱ)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평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ㄴ) 런플랫(Run-flat)형, 튜브형 타이어 등과 같이 평크 수리 시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ㄷ) 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 ㄹ) 그 밖의 현장에서 타이어펑크 수리가 곤란한 경우 이 서비스는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치감합니다.
5) 잠금장치 해제	가. 피보험자동차의 열쇠를 분실하는 등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

서비스 종류	보상내용
5) 잠금장치 해제	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위 '가'의 잠금장치 해제 시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 모빌라이저 등)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 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출동차량이 현장에서 잠금장치해제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6) 긴급구난	가. 피보험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출동한 자동차로 구난 가능한 경우에만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 (*1)에는 피보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합니다. 나. 위 '가'의 긴급구난 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힘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 1)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 (2)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 (3)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까지 걸린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 (4) 2,500cc이상의 "국산차량 및 외제차량"을 구난한 경우

② 위 제1항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 조치만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견인을 할 경우에 위 제1항의 1)'과 같은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SOS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SOS서비스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서비스의 요청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SOS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 2) 섬(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섬 제외) 또는 산간 지역
 - 3)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② 회사는 SOS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 (특약의 자동종료)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 가입 후 SOS서비스를 1회 받았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끝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⑥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 (사고카드 계약)

-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⑦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타인자동차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함)는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타인자동차손해」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에 따라 이 특별약관에 정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실제 수리 시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 또는 배상책임(대물배상) 대상 자동차가 출고 후 5년을 초과한 경우로서, 외장부품^(*)을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나 피보험자가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를 희망하는 경우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OEM부품이라 함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말하며, OEM부품 공시가격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3) 이 특별약관에서 외장부품이라 함은 자동차의 외판을 구성하는 부품으로서 범퍼, 보닛(후드), 펜더, 트렁크리드, 도어 및 백 도어를 의미합니다.

제3조(OEM부품 사용에 대한 특례)

회사는 보통약관 「대물배상」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OEM부품으로 교환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및 「타인자동차손해」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OEM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경미한 손상^(*)1)에 해당하여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
2. 자동차에 이미 장착되어 있던 OEM부품 또는 품질인증부품 이외의 부품^(*)2)이 파손되어 교환수리하는 경우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OEM부품 또는 품질인증부품 이외의 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중고부품, 재생부품 등을 의미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상책임(대물배상) 대상자동차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 「대물배상」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타인자동차손해」 제1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또는 운전 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보통약관 「대물배상」 인 경우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 보통약관 「타인자동차손해」 인 경우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환입)

- ①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타인자동차손해」의 보험금을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였으나, 품질인증부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OEM부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7조(적용 제외)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OEM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하며,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따른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품질인증부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 지연 등의 사유로 회사가 OEM부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OEM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 ② 이 특별약관 제3조(OEM부품 사용에 대한 특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따른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전국 보상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행위 금지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관련 문의(DB손해보험)

- 전 화 : 1566-0000(전화 가입고객 전용상담센터)
1600-0100(인터넷 가입고객 전용상담센터)

- Copyright © 2014 by Pearson Education, Inc.

- 전화 : 1588-3311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인터넷보험신고센터」

예금자 보호안내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정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분쟁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객상담센터 또는 계약체결지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저히 회사 전화번호

- 고객상담센터 : 1566-0000(전화 가입고객 전용상담센터)
1600-0100(인터넷 가입고객 전용상담센터)
 - 계약체결 지점 : 출구에 기재된 연락처 참조

■ 과력 기관 : 손해보험협회 그 유통망

- 22 12 2 11-001, 000 12

전화상담 고객상담센터	1566-0000
24시간 사고접수	1566-0000
전국 보상센터 (보상안내 및 처리)	
■ 보상센터	
강북대인보상부	: 02) 2094-8000
동대문대인보상센터	: 02) 2094-8011
서대문대인보상센터	: 02) 2094-8051
노원대인보상센터	: 02) 2094-8082
성동대인보상센터	: 02) 2094-8013
의정부대인보상센터	: 02) 8092-6141
일산대인보상센터	: 031) 8092-6151
강남차량보상부	: 02) 2094-8000
노원차량보상센터	: 02) 2094-8081
동대문차량보상센터	: 02) 2094-8000
서대문차량보상센터	: 02) 2094-8052
성동차량보상센터	: 02) 2094-8000
의정부차량보상센터	: 031) 8092-6142
일산차량보상센터	: 031) 8092-6152
마포차량보상센터	: 02) 2094-8031
강남대인보상부	: 02) 2094-8062
강남대인보상센터	: 02) 2094-8072
성남대인보상센터	: 031) 720-2657
강북차량보상센터	: 02) 2094-8021
영등포차량보상센터	: 02) 2094-8032
마포차량보상센터	: 02) 2094-8031
강남차량보상부	: 02) 2094-8064
강남차량보상센터	: 02) 2094-8065
강남차량보상센터	: 02) 2094-8002
구로차량보상센터	: 02) 2094-8034
성동차량보상센터	: 031) 720-2658
영등포차량보상센터	: 02) 2094-8033
이천차량보상센터	: 031) 720-2664
제주차량보상센터	: 064) 710-5563
동북아대인보상부	: 02) 2094-8042
강릉차량보상센터	: 02) 2094-8042
구미대인보상센터	: 031) 8092-6184
원주대인보상센터	: 031) 760-9200
강릉차량보상센터	: 031) 645-7220
송파대인보상센터	: 02) 2094-8091
동서울차량보상부	: 031) 8092-6184
강동차량보상센터	: 02) 2094-8047
강북차량보상센터	: 031) 610-2451
구리차량보상센터	: 031) 8092-6184
원주차량보상센터	: 031) 760-9201
강북차량보상센터	: 031) 259-5941
외계차량보상부	: 02) 455-8370
외계차3센터	: 02) 455-8370
외계차4센터	: 02) 2094-8071
외계차5센터	: 02) 2094-8071
외계차6센터	: 032) 280-4206
외계차7센터	: 051) 460-4983
외계차7센터	: 053) 357-6684
외계차8센터	: 010-7467-8091
수도권스페드대인보상부	: 02) 6953-7504
수도권대인보상센터	: 02) 6959-6307
수도권대인보상센터	: 02) 6952-9286
수도권대인보상센터	: 02) 6953-1938
수도권스페드차량보상부	: 02) 6959-7258
스피드1센터	: 02) 6953-8757
스피드2센터	: 02) 6953-8744
스피드3센터	: 02) 6953-8759
스피드4센터	: 02) 6953-8613
스피드5센터	: 02) 6953-8650
스피드6센터	: 02) 6953-8718
보산대내차량부	: 02) 2117-5419
보상안내센터	: 02) 2117-5491
보안내부차량팀	: 02) 2117-5491
인천대인보상부	: 032) 280-4201
서인천대인보상센터	: 032) 280-4211
동인천대인보상센터	: 032) 280-4221
부평대인보상센터	: 032) 280-4203
부천대인보상센터	: 032) 280-4221
시흥대인보상센터	: 031) 8092-6171
인천차량보상부	: 032) 280-4237
남인천차량보상센터	: 032) 280-4235
동인천차량보상센터	: 032) 280-4236
부평차량보상센터	: 032) 280-4205
시흥차량보상센터	: 032) 280-4212
경기대인보상부	: 031) 8092-6104
서수원대인보상센터	: 031) 8092-6102
안양대인보상센터	: 031) 8092-6102
동수원대인보상센터	: 031) 8092-6103
평택차량보상센터	: 031) 8092-6191
안성대인보상센터	: 031) 8092-6191
용인대인보상센터	: 031) 8092-6121
경기차량보상부	: 031) 8092-6114
서수원차량보상센터	: 031) 8092-6114
안양차량보상센터	: 031) 8092-6162
동수원차량보상센터	: 031) 8092-6113
평택차량보상센터	: 031) 8092-6192
안산차량보상센터	: 031) 8092-6142
용인차량보상센터	: 031) 8092-6122
부산대인보상부	: 051) 460-4973
서부산대인보상센터	: 051) 460-4970
동부산대인보상센터	: 051) 460-4972
울산대인보상센터	: 052) 228-4058
김해대인보상센터	: 055) 344-5472
창원대인보상센터	: 055) 259-7251
진주대인보상센터	: 055) 749-3329
부산차량보상부	: 051) 850-4924
김해차량보상센터	: 055) 344-5472
남산차량보상센터	: 051) 460-4981
동남산차량보상센터	: 051) 460-4970
울산차량보상센터	: 055) 250-7256
사상차량보상센터	: 051) 311-5804
서부산차량보상센터	: 010-7467-8421
울진차량보상센터	: 010-7467-9012
진주차량보상센터	: 055) 749-3330
창원차량보상센터	: 055) 259-7257
경기대인보상부	: 053) 430-5449
동구대인보상센터	: 053) 430-5445
남대구대인보상센터	: 053) 430-5446
서구대인보상센터	: 053) 659-2891
포항대인보상센터	: 054) 271-4653
구미대인보상센터	: 054) 450-5751
대구차량보상부	: 053) 554-0606
구미차량보상센터	: 054) 450-5752
남대구차량보상센터	: 053) 554-0606
북구차량보상센터	: 053) 793-9450
북대구차량보상센터	: 053) 357-6682
세종차량보상센터	: 053) 659-2893
안동차량보상센터	: 054) 851-4471
포항차량보상센터	: 054) 271-4654
충청대인보상부	: 042) 600-7300
대전대인보상센터	: 042) 600-7304
세종대인보상센터	: 042) 600-7440
경주대인보상센터	: 043) 229-2110
천안대인보상센터	: 041) 901-0771
여주대인보상센터	: 041) 359-0871
충청차량보상부	: 042) 600-7400
동원대차량보상센터	: 042) 600-7405
세종대차량보상센터	: 042) 600-7403
충주대차량보상센터	: 042) 600-7330
청주대차량보상센터	: 041) 574-5598
충주차량보상센터	: 043) 229-2130
증주차량보상센터	: 043) 840-8054
충청차량보상센터	: 041) 359-0881
제주스페드차량보상부	: 070-4866-3162
스피드부산대인센터	: 070-4866-3162
스피드대구인센터	: 053) 719-3744
스피드부산대인센터	: 051) 714-1697
스피드대구차량센터	: 062) 719-4216
자방스피드차량보상부	: 070-4866-3166
스피드부산대인센터	: 051) 714-0492
스피드부산대인센터	: 051) 714-0466
스피드대구차량센터	: 062) 719-4246
호남대인보상부	: 062) 220-8480
전남대인보상센터	: 061) 729-2031
전남대인보상센터	: 061) 284-7543
동광대차량보상센터	: 062) 220-8411
서광대차량보상센터	: 062) 220-8450
전주대인보상센터	: 063) 230-4066
군산대인보상센터	: 063) 463-9774
호남차량보상부	: 062) 220-8440
군산차량보상센터	: 063) 472-7154
동광대차량보상센터	: 062) 220-8482
목포차량보상센터	: 061) 280-8282
서광대차량보상센터	: 062) 220-8481
순천차량보상센터	: 061) 729-2026
전주차량보상센터	: 063) 230-4056

* 파부이 나장모되어 악과은 교회하여 드립니다. 강원의 B T 02-722-7228 / DB소해의 혁 총무과 T 02-3011-3321

함께, 약속한다는 건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고 싶은 소망입니다.

안전을 위한 다짐이 되고,
건강을 살피는 따뜻한 관심이 되며,
사랑을 전하는 진심입니다.

우리의 작은 약속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내일이 되고,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시작이 되기를.

DB손해보험은 언제나 그 곁에서
함께, 약속합니다.

함께, 약속

